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1월 30일
의회 운영 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1월 10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2년 11월 3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정재동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결과 및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2023년 월정수당을 연 3,122만원으로 하고, 2024년 ~ 2026년 월정수당은 이전연도 월정수당에 이전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(안 제3조제2항)
 -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적용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(안)」은 2022. 10. 7.일자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〈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 내용〉

□ 의정비(의정활동비+월정수당)

○ 2023년 : 연 4,442만원(월 370.2만원)

- 의정활동비 : 연 1,320만원(월 110만원)

- 월 정 수 당 : 연 3,122만원(월 260.2만원)

○ 2024년 ~ 2026년 : 매년 「의정활동비+월정수당」

- 의정활동비 : 연 1,320만원(월 110만원)

- 월 정 수 당 : 전년도 월정수당 기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

-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,

-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제9대 금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의결사항(2023년 3,122만원, 2024년~2026년 월정수당은 이전연도 월정수당에 이전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)으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(1.4%)을 반영한 2023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정하는 것이며(안 제3조제2항),

※ 의원 월정수당 기준금액 : 2023년도 연 3,122만원

▷ 2022년 의원 월정수당 : 연 3,079만원

▷ 전년도 대비 2023년 월정수당 1.4%(43만원) 인상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범위와 관련하여 별표 6의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에 따라 해당규정을 이에 맞추어 정비함(안 제7조).

○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,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